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2년 7월 4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건 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6월 12일(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2년 6월 14일(목)

4. 제정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검토의견

0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양성(남녀)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임.

이번 조례의 제정은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물리적 조성방향 및 공공서비스 운영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0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11년12월말 현재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 등 전국 30개 도시를 지정하였고, 금년도에 10개 도시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정책 컨설팅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여성친화적 어메니티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지원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삶의 질을 보듬는 지역정책,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행복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수단임. 따라서 조성과정은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하에 계획, 실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자체 행정의 유연하고 책임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등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 및 참여자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업이 전개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함. 조례제정을 통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여성가족부의 ‘여성참여도시 조성 매뉴얼’에 지자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수 40%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1년6월말 현재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보면 위촉위원 수 753명 중 위촉직 여성위원 수 237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1.4%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8조에 의한 여성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 수가 편중되어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아 성 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및 여성참여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

0 조례안 제2조제5호에서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이를 조문에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같은 호 각목의 정의 규정은 안 제12조에서 안 14조까지의 조문과 혼선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4조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용어를 정의하였으므로 이를 “여성친화도시”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준용하여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등의”로 하며, 안 제16조제2호 중 “시설의”는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 간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21조 제목 “설치”는 “위원회 설치”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조항을 정리하여 이를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로 수정을 요함.

안 제22조제5호 중 “중앙정보협력”은 “중앙정부 협력”으로, 안 제2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u>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u>”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u>도시기반시설</u>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p> <p>나. <u>공공이용시설</u>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p> <p>다. <u>주거단지</u> : 단지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여성친화적 도시</u>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u>산업단지</u>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4. (원안과 같음)</p> <p><삭제></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 ----- ----- <u>여성친화도시</u> ----- ----- ----- ----- ----- ----- -----.</p> <p>제12조(도시기반시설) ----- ----- <u>산업</u> <u>단지</u> 등의 ----- -----.</p> <p>1. ~ 3. (원안과 같음)</p> <p>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 ----- ----- ----- ----- -----.</p>

<p>1. (생략)</p> <p>2. 시설의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 훈련 지원</p> <p>3.·4. (생략)</p> <p>제21조(설치) ① (생략)</p> <p>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8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 다.</p> <p>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심 의한다.</p> <p>1. ~ 4. (생략)</p> <p>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u>중앙정 보협력</u>에 관한 사항</p> <p>6. (생략)</p> <p>제23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 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기 본조례」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를 준용한다.</p>	<p>1. (원안과 같음)</p> <p>2. <u>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 관 간</u>----- -----</p> <p>3.·4. (원안과 같음)</p> <p>제21조(위원회 설치) ① (원안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역할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8 조에 의해 설치한 여성위원회가 수행한다.</p> <p>제22조(기능) ----- ----- -----.</p> <p>1. ~ 4. (원안과 같음)</p> <p>5. ----- <u>중앙 정부 협력</u>-----</p> <p>6. (원안과 같음)</p> <p>제23조(구성 등)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 본 조례」----- -----.</p>
---	--